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7, 의안번호 1142)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및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의안번호 1037, 1142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김태수 의원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1037)

(1) 제 안 자 : 김태수 의원(찬성의원 10명)

(2) 제 안 일 : 2019. 09. 26.

(3) 회 부 일 : 2019. 10. 22.

나.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1142)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2) 제 안 일 : 2019. 10. 16.

(3) 회 부 일 : 2019. 10.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김태수 의원 제출 일부개정조례안(1037)

(1) 제안이유

- 실적이 저조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묘지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하도록 규정함(제4조 및 제5조제1항)

나. 서울특별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1142)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김태수 의원 제출 일부개정조례안(1037)

- (1)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3)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나.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1142)

- (1)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 (2) 예산 조치 : 협의완료
- (3) 기 타 :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나) 입법예고(2018.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37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존묘지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의안번호 1142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가. 김태수위원의 안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삭제(안 제4조,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u><삭 제></u>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은 해당 회의 끝남과 함께 위촉해제된다.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9.4.23., 제 16376호)에 따라 동법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이 삭제되었고,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으로 개정되었음.
- 현재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삭제하려는 안은 그동안 기존 심사위원회의 보존묘지심사와 관련한 심의 실적이 없고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된 예산 또한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나. 서울특별시장 안 -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항 신설(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09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7109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 ---		

-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부칙 제2조)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 소상공인의 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현재 '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었으나 감면유효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조례안이 개정될 당초에도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장사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간을 정한 일몰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안정성, 시장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음.

- 제로페이 사업의 홍보강화와 저변확대라는 측면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제로페이로 결제 시 이용방식의 복잡함 등이 기인한다고 여겨짐.
- 단순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며, 제로페이 기한 연장에 대하여 시장에 미치는 제한적인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장사시설 제로페이 실적〉

(단위: 천원, 2019.10월말 기준)

담당실국 (부서명)	사업명	할인 실적 현황				
		기관명	할인종류	할인비율	할인 건수	할인총액
(어르신복지과)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승회원, 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5%	598건	11,065

3 종합 의견

-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37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보존묘지 심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자문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4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장사시설 사용료를 결제 할 경우에는 일정한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짐.
- 그러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순히 기간을 정한 일몰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안정성, 시장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로페이 결제 방식이 시장에 미치는 제한적인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시 기한만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